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5

수 원 지 방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6194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6. 9. 6.
판 결 선 고	2016. 10.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207,450원, 지방교육세 640,420원, 농어촌특별세 800,5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5

가. 원고는 [redacted]시 B 외 1필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이하 '기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2. 5. 8. 원인미상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기존 건물이 멸실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 11. 기존 건물의 면적보다 큰 규모인 면적 993.32㎡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재축하여 그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에게 기존 건물의 멸실에 따른 대체취득을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2013. 1. 24. 피고로부터 기존 건물의 연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취득세 등 감면결정을 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2016. 2. 4. 원고에 대하여 '원인불명의 화재'는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화재'가 아니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에서 정한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11,207,450원, 지방교육세 640,420원, 농어촌특별세 800,53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은 감면사유로서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을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는 '그 밖의 불가항력'이란 '지진 · 풍수해 · 벼락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5

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실'이나 '화재'를 자연력에 의하여 발생한 소실 또는 화재로 제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화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재해인 점 등을 감안하면, 기존 건물이 소실되어 동일한 위치에 재축한 이 사건 건물 중 기존 건물의 연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취득세 등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인미상의 화재로 인하여 재축한 이 사건 건물은 불가항력으로 멸실한 건축물을 대체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의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는 그 조문의 제목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5

으로 되어 있고, 제1항 본문은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 선박 ·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그 밖의 불가항력'이란 '지진 · 풍수해 · 벼락 · 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은 그 문언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 본문의 '천재지변, 소실, 도괴'는 그 경위와 상관없이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를 열거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불가항력'을 예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화재'도 '화재'이기만 하면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고, '불가항력적인 화재'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화재는 사람의 행위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는 자연현상인 지진 · 풍수해 · 벼락과 달리 인간의 고의나 과실 등이 개입되어 발생할 수도 있는바, 인간의 고의나 과실 등이 개입된 화재까지 불가항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불가항력에 포함되는 화재는 '불가항력적인 화재'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연혁적으로 보더라도 위 각 규정의 시초가 된 1950. 3. 27. 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6호는 감면사유를 '소실, 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한 건물을 복구'하는 경우로 정하였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상 '소실'(사전적 의미는 불에 타서 사라짐이다)은 '불가항력적인 소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언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제2장 각 절의 제목(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은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에 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납세의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의 규정이 이미 기존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그 피해를 단기간 내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5

복구하려는 납세의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규정이 고의나 과실에 의한 소실 또는 화재의 경우까지 납세의무자를 지원하려고 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지원하려고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지진, 풍수해, 벼락 등과 같이 자연현상에 의한 것이어서 사람으로서는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서도 회피하거나 방지하기 어려운 천재지변이 아닌 사람의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많은 '소실' 내지 '화재'는 '지진 · 풍수해 · 낙뢰'와 같은 수준의 '불가항력적인 소실, 화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서 정한 '불가항력'이란 언어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힘'(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으로서, 이는 사람(개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외부로부터 발생하여 사람으로서는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서도 회피하거나 방지할 수 없는 일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어떠한 재해가 '불가항력'의 개념에 포섭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행위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여 예측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 '불가항력'의 유형 중 하나로 들고 있는 '화재'는 사람의 행위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화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명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사람의 행위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화재는 기존 건물 1층 창고에서 발생하였는데 창고에는 냉장고, 냉온수기 등 전자기기가 설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창고 내부에 다량의 가연성 내장재가 있어 화재가 확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5

때 사람의 행위 지배영역 내의 것으로 판단한 여지가 크다.

④ 불가항력은 무과실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귀책사유 유무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의 정책적 지원을 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데 재산상 피해에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순

판사 박소연

판사 문중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5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천재지변, 소실, 도괴(倒壞),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 건조, 종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2. 선박을 건조하거나 종류 변경을 하는 경우
3.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②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의 말소등기 또는 말소등록과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③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불가항력의 의의 등)

① 법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밖의 불가항력"이란 지진·풍수해·벼락·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② 법 제92조제2항에서 “그 밖의 불가항력”이란 지진·풍수해·벼락·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끝.